

소방법 체계개편 (上)

최근 기존의 소방법을 국민편의 위주의 4개 소방관계 법률로 개편, 체계개편과 관련한 주요 변동내용을 2회에 걸쳐 게재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이윤근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1. 소방법 체계개편의 배경

1958. 3. 11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화재 또는 사고발생시 마다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 없이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단일 소방법에 소방조직, 안전관리분야, 사업분야, 위험물분야 등 모든 내용이 혼합적으로 규정, 법규 내용이 어렵고 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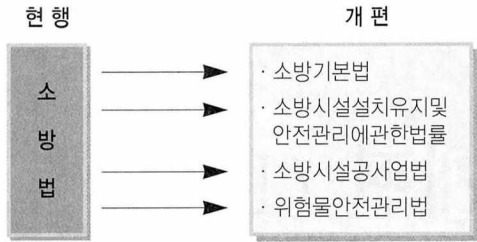
따라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소방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개편함으로써 국민이 소방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증대되는 소방수요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개편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소방법 체계개편 방향

- ▶▶ 현행 소방법을 근간으로 기본적 사항, 시설안전, 공사업, 위험물관리로 분야별 기능에 따라 전문화된 법으로 개편
- ▶▶ 법제연구원 및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법령용어를 순화하고 법조문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편익중심으로 정비
- ▶▶ 신제품·신기술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면, 형식승인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한 수용체계의 도입체제 구축

3. 소방법 체계개편의 체계

- ▶▶ 현행 소방법을 근간으로 분야별 기능에 따라 4개 분야로 개편



- ▶▶ 소방기본법 ▷ 통칙적기본사항,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 등
-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 소방시설설치, 관리기준 등
-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설계·시공 기술관리 등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의 저장·취급 안전관리 등

4. 법률별 개편내용

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진압,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업무와 소방활동, 화재조사, 의용소방대 운영 및 산하단체 등에 관하여 규정

- (1) 소방의 목적, 책무 및 소방력 기준과 모든 소방기관에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2) 정부차원의 소방의 날 행사 제정·운영, 소방박물관 설립·운영
- (3) 화재경계지구 지정 및 화재원인과 화재조사 규정
- (4) 국외에서 재난·재해시 「국제구조대」 편성·운영 근거 신설

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검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소방용기계·기구 등 형식승인과 안전관리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

- (1)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근거 마련
공공기관, 국공립 교육시설 등의 방화관리 규정 근거 신설
- (2) 소방시설관리업의 과징금제도 도입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3) 우수품질제품의 인증제도 도입
소방용기계·기구중 우수한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 근거 신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에 관하여 규정

- (1) 소방시설 설계업·공사업 및 감리업을 소방시설업으로 규정하고, 등록기준·절차 개선
- (2)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제도 도입
영업 정지처분을 할 경우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3) 소방시설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공사감리자의 성실의무조항 도입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 운반, 감독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하여 규정

(1) 위험물 품명변경 등의 허가제도 개선

위험물의 품명·수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신고로 완화

(2) 대형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제도 도입

대형위험물 운반용기 사용을 허용하되 용기검사를 의무화 함

※ 현행 250ℓ 운반용기만 허용하던 것을 최고 3,000ℓ 까지 허용

(3) 위험물운송자 자격기준 도입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은 자격소유자로 하여금 이송하도록 함

5. 소방법령 개편으로 강화되는 안전기준의 주요내용

첫째, 이번에 개편된 주요내용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신축아파트에 세대별로 자동소화기 설치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둘째, 100인 이상 수용 영화관, 학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제연설비 설치, 불연재 사용과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비치의 의무화한다.

셋째, 가스를 사용하는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넷째,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건축주 또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다섯째, 주유소 내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주유소 부대시설의 면적을 500㎡ 이하로 제한한다.

6. 시행령별 강화되는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대상 신설

1990년대 이후 가스가 우리나라의 대중연료로 자리 잡으면서 취사용 또는 난방용 가스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스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숙박시설·노유자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청소년시설·의료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2) 방염처리업 등록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신설

종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고 방염성능에 미달 제품이 유통되어 화재예방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공전공자 등 유자격자와 처리설비를 갖춘 자가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도록 하여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나 등록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방염처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3) 영화상영관·지하역사·아파트 등의 안전기준 강화

(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원·영화상영관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제하여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장식물에 불연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2006. 5. 29까지 비상구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나) 최근 아파트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5. 1. 1.부터 새로 짓는 11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는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아파트의 모든 주방에는 자동식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4)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제도 도입

종전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3일간 실시하는 방화관리업무 강습수료자에게 방화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방화관리자의 업무능력과 위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강습시간을 5일로 강화하고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5)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 의무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제연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종전에는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만 연 1회 이상 전문점검업체의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5,000㎡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로 확대하였다.

(6)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기준 강화

소방관서의 소방검사시 소방시설에 대한 불량사항이 적발될 경우 1차 시정보완명령을,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으나 5월 30일부터는 1차 시정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고 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자체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7) 일반 목욕장·체육관 등의 경우에도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업소의 관계인은 시행규칙의 공포에 따라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8) 방화관리자 선임신고기간 단축

건축주 등이 방화관리자를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5월 30일부터는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신고기간을 단축하였다.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 소방기술자실무교육을 민간기관에 완전개방

지금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금년 6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교육인력과 시설을 갖춘 민간기관에서도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2) 대지구하철사고를 계기로 시공단계부터 소방시설의 적정시공을 위해 소방공사감리지정기준 강화

종전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한하여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5월 30일부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자동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1천m 이상의 지하구의 경우에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였다.

(3) 소방시설시공 신고대상 확대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

우에만 소방서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5월 30일부터는 소방시설작동의 중추기능을 가진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반, 스프링클러 설비 등의 소화펌프와 소방시설용 동력감시 제어반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하여 소방서로 하여금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 50만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암반탱크 저장소 허가요건 강화

종전에는 소방서장이 직접 허가심사를 하던 것을 정부의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질·토목 등 전문기술에 관한 사항은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2)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사무소·자동차정비장·점포 등의 면적제한

주유취급소 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한 면적 제한이 없어 부대시설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화재발생위험이 높아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면적을 500㎡ 이하로 제한하였다.

(3) 위험물운반용기 기준 강화

종전에는 250ℓ 이하의 용기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국제물류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대형운반용기(3,000ℓ)의 사용을 허용하되,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용기의 안전검사 받도록 하였다. ㉞